| 일련번호 | 1 | 감사자 | 행정○급 ○○○, 행정○급 □□□<br>행정□급 △△△ | | 공 개(○)<br>비공개( ) |
|---|---|---|---|---|---|
| 신분상 조치인원 | 훈계○, 주의□ | 재정상 조치방법 | 추징 및 감액 | 재정상 조치금액 | 추징○○○○만원<br>감액○○○만원 |
| 수감부서<br>(처리할 부서) | 도로관리사업소<br>(□□□□팀) | 처분지시일자 | | 회신기일 | |

# 파 주 시
# 시정 요구 및 훈계

제 목 도로점용료 부과·징수 업무 부적정

관 계 부 서 도로관리사업소

내 용

**[표]도로점용료 부과 부적정 내역**

(단위 : 원)

| 연 도 | 과소부과 내역: ○○○○건 ○○○,○○○,○○○원 | | | | 과다부과내역<br>감액 대상(시·도세) | |
|---|---|---|---|---|---|---|
| | 시세 | | 도세 | | | |
| | 건 수 | 미부과액 | 건 수 | 미부과액 | 건 수 | 금액 |
| 합계 | ○○○○ | - | □□ | - | □□ | - |
| 2015년 | ○○○ | - | △ | - | □ | - |
| 2016년 | △△△ | - | △△ | - | □ | - |
| 2017년 | □□□ | - | □□ | - | □ | - |
| 2018년 | ○○○ | - | □□ | - | □ | - |

○ 「도로법」 제61조(도로의 점용 허가), 제66조(점용료의 징수 등), 제106조(권리·의무의 승계 등)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9조(점용료의 산정기준 및 조정), 제71조(점용료의 부과·징수 및 반환)에 따르면 공작물·물건, 그 밖의 시설을 신설·

개축·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도로를 점용하려는 자나, 허가받은 기간을 연장하거나,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는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도로관리청은 도로점용 허가를 받아 도로를 점용하려는 자로부터 점용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점용료의 산정기준, 점용료의 징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고속국도 및 일반국도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그 밖의 광역시도 등 도로에 관하여는 해당 도로관리청이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파주시 도로점용 징수 조례」 제6조(점용료의 부과·징수) 및 제8조(점용료 등의 조정)에 따르면 점용기간이 1년 미만인 때에는 허가를 할 때 전액을 부과·징수하고 점용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매 회계연도 단위로 부과하되 해당 연도 분은 허가하는 때에, 그 이후의 연도분은 매 회계연도 개시 후 3개월 이내에 부과·징수하고, 도로를 계속하여 2개 연도 이상 점용하는 경우로써 산정된 연간 점용료가 전년도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해야 할 연간 점용료보다 100분의 10 이상 증가하게 되는 경우에는 전년도에 납부한 연간 점용료보다 **100분의 10이 증가된 금액**으로 하고 점용료를 납부하지 않은 자에 대한 강제징수는 지방세징수의 예에 따른다.

○ 또한 〔별표 1〕 점용료 산정기준표에 따르면 ①주유소·주차장·휴게소 등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과 이를 위한 진입로 및 출입로는 점용면적 1㎡당 1년에 토지가격의 0.02를 곱한 금액으로 하고, ②공사용 판자벽·발판·대기소 등의 공사용 시설 및 재료의 일시 점용한 것은 점용면적 1㎡당 1일에 150원을 곱하여 산정하는 등 점용물의 종류에 따라 기준단위 및 점용료를 적용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 따라서 점용기간이 1년 미만으로 신청한 경우 해당연도에는 신청한 기간만큼 점용료를 부과하고 그 이후 연도분은 1년에 해당하는 점용료를 부과·징수하고 점용기간 중 면적이 증가하였을 때에는 증가된 면적을 적용해 점용료를 산정하여 수익자 모두가 공평한 과세를 부담하도록 도로점용료 부과대상을 철저히 관리하여 정확히 부과될 수 있도록 하였어야 했다.

○ 그러나 도로관리사업소에서는 2016년 12월 2일 허가처리된(점용기간 : 2016.12.2.~2017.7.31.) 파주시 □□면 ○○리 xxxx번지 □□□□□(주) 공사장 진출입로 목적의 일시점용허가 신청에 대해 2016.12.2.~12.31.까지 도로점용료 461,700원을 부과·징수하였고 2017.7.19. 접수된 도로점용 기간연장 신청에 대해 2018.12.31까지 기간연장 허가 통보를 하면서 「파주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별표1 점용료 산정기준표에 따라 2017년 도로점용료 x,xxx,xxx원(산출식: 102.6㎡*150원*365일=x,xxx,xxx원)을 부과하여야 하나 2016년 도로점용료 납부금액 xxx,xxx원보다 100분의 10이 증가된 금액인 yyy,yyy원을 부과하여 정당금액보다 z,zzz,zzz원을 과소 부과하였으며

○ 2015년~ 2018년 감사일까지 시세 및 도세 총 △,△△△건 xxx,xxx,xxx원을 과소 부과하였고 ○○건 yy,yyy,yyy원을 과다 부과하였으며, 2018년 정기분 대상 △△△건에 대해서도 현재까지 부과하지 않는 등 도로점용료 부과업무에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 또한, 운정신도시개발 및 각종 개발사업 수요의 증가로 도로점용허가 신청건수가 2013년도 2,573건에서 2017년에는 4,128건으로 62%가 증가하였고 신규인력 배치로 업무연찬 및 숙련도가 떨어져 도로점용료 부과·징수 업무에 어려움이

있었다고 주장하나 도로점용료 경력 공무원이나 신규 충원인력 보강요청 등 업무를 충실히 하였어야 함에도 이러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사실이 있다.

※ 도세 및 시세 과소 과다 부과내역 엑셀 참고

**조치할 사항 도로관리사업소장은**

**【 시 정 】**

① 2015년 ~ 2018년 기간 중 도로점용료 과소 부과된 △,△△△건, xxx,xxx,xxx 원을 정당 부과·징수하시고 과다 부과된 △△건 yy,yyy,yyy원을 감액 하고

② 2018년 도로점용료 정기분 미부과 대상에 대해서도 부과완료 하는 등 도로점용료 관련 법령 업무연찬 및 숙지를 통해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련자 문책(훈계 ○명, 주의 ○명)

| 일련번호 | 2 | 감사자 | 시설△급 ○○○ | | 공 개(○)<br>비공개( ) |
|---|---|---|---|---|---|
| 신분상 조치인원 | - | 재정상 조치방법 | | 재정상 조치금액 | |
| 수감부서<br>(처리할 부서) | 도로관리사업소<br>(□□□□팀) | 처분지시일자 | | 회신기일 | |

# 파 주 시
# 시정 및 개선 요구

**제 목** 도로점용 변상금 부과 업무 소홀

**관 계 부 서** 도로관리사업소

**내 용**

□ **도로점용 허가 현황 [별표 생략]**

○ 도로관리사업소에서는 [별표]와 같이 진출입로 사용, 사설안내표지 등의 목적으로 251건의 도로점용 허가를 처리하였다.

○「도로법」제61조(도로의 점용 허가) 규정에 따르면 도로를 점용하려는 자는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받은 기간을 연장하려는 때에도 점용허가를 받아야 함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별표2(도로점용허가의 기준)에 따르면 건축물의 진출입로 사용을 목적으로 점용하는 경우 1회 점용기간은 10년 이내, 표지판 등은 3년 이내, 버스표판매대·노점 등의 경우 10년 이내로 규정하고 있다.

○ 그리고 같은 법 제72조(변상금의 징수)에 따르면 도로관리청은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를 점용하였거나, 도로점용허가의 내용을 초과하여 도로를 점용한 자에 대하여는 초과점용 등을 한 기간에 대하여 점용료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금액을 변상금으로 징수 할 수 있고,「파주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제2조(점용료 및 변상금 부과대상)에 따르면 변상금은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를 점용한 자에 대하여 부과·징수함을 규정하고 있다.

○ 그러나 [별표]의 251건 도로점용 허가건의 경우 진출입로, 사설표지판 설치 목적 등으로 허가를 받은 후 2017. 12. 31 이전 점용기간이 이미 만료된 상태로서 계속 사용을 위해서는 도로점용 기간연장 허가를 받아야 하나 기간연장 허가 없이 사용되고 있으므로「도로법」제72조,「파주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제2조 규정에 따라 초과점용 등을 한 기간에 대해 점용료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금액을 변상금으로 징수함이 타당하나, 사후관리를 소홀히 하여 변상금을 부과하지 않고 방치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도로관리사업소장은**

**【 시 정 및 개 선 】**

도로점용 기간연장 허가 없이 사용되고 있는 251건에 대하여 빠른 시일 내 기간연장 양성화 또는 원상회복 조치하시고 사후관리 개선대책을 마련하여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 일련번호 | 3 | 감사자 | 시설△급 ○○○ | | 공 개(○)<br>비공개( ) |
|---|---|---|---|---|---|
| 신분상 조치인원 | - | 재정상 조치방법 | 추징 | 재정상 조치금액 | x,xxx,xxx원 |
| 수감부서<br>(처리할 부서) | 도로관리사업소<br>(▢▢▢▢팀) | 처분지시일자 | | 회신기일 | |

# 파 주 시
# 시 정 요 구

**제 목** 도로점용료 감면 적용 부적정

**관 계 부 서** 도로관리사업소 ▢▢▢▢팀

**내 용**

○ 도로점용 허가 현황

| | 사업부지(건물위치),<br>점용허가 신청지번<br>(도로종류) | 수허가자,<br>점용기간 | 점용목적<br>(면적) | 점용료 부과(원) | | | 비고 |
|---|---|---|---|---|---|---|---|
| | | | | 정당액<br>(A) | 실부과액<br>(B) | 차액<br>(C=A-B) | |
| **계** | **2개소** | | | **D** | **E** | **I** | |
| 1 | ▢▢동 xxxx<br>(도시계획 도로) | △△△△△△(주)<br>2017.10.16<br>~2026.12.31 | 근생 및<br>숙박시설<br>진출입로<br>(77.9m$^2$) | A | F | J | 2017년 분 |
| | | 2017.10.16<br>~2026.12.31 | | B | G | K | 2018년 분 |
| 2 | ▢▢동 xxxx<br>(도시계획 도로) | ▲▲▲▲▲▲<br>2018. 2. 8<br>~2026.12.31 | 근생 및<br>숙박시설<br>진출입로<br>(186m$^2$) | C | H | L | 공시지가<br>과소적용포함 |

○ 도로관리사업소에서는 파주시 ○○동 xxxx번지와 ○○동 xxxx-y번지상 건축물 신축예정 부지상에 진출입로 목적으로 위 현황과 같이 2건의 도로점용허가를 처리하고 합계 x,xxx,xxx원의 도로점용료를 부과하였다.

○ 「도로법」 제66조(점용료의 징수 등) 같은 법 시행령 제69조(점용료의 산정기준 및 조정)에 따르면 도로관리청은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도로를 점용하는 자로부터 점용료를 징수할 수 있고 고속국도 및 일반국도 외의 도로에서 징수하는 점용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파주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제3조(점용료의 산정기준)에 따르면 점용료는 「별표1」의 기준에 따라 건축물 등의 진출입로 목적으로 도로를 점용하고자 하는 경우 점용면적 1제곱미터 당 토지가격(도로점용 부분과 닿아 있는 토지의 개별공시지가)에 0.02를 곱한 금액으로 산정함을 규정하고 있다.

○ 그리고 같은 법 제68조(점용료 징수의 제한) 제4의2호와 같은법 시행령 제73조(점용료의 감면) 제3항 제3호에 따르면 「주택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준주택(주거의 형태에 한정한다)에 출입하기 위해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 점용료의 1/2를 감액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 주택법 제2조제4호 「준주택」 이란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기숙사, 다중생활시설(일명 '고시원'으로서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 거목 및 제15호 다목의 다중생활시설), 노인복지주택, 오피스텔을 의미

○ 그러나 파주시 ○○동 xxxx, xxxx-y번지상 건축물은 「제1,2종 근린생활시설 및 생활숙박시설」로서, 이는 주택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준주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도로점용료를 1/2 감액할 수 없고 정액 100%를 부과하여야 하므로 □□□□□□(주)는 2017년 금yyy,yyy원을, 2018년 금z,zzz,zzz원을 부과하여야

하고 ▲▲▲▲▲▲▲은 2018년 금s,sss,sss원을 부과하여야 하나, 이에 대한 검토를 소홀히 하여 전체 용도 중 숙박시설에 해당하는 도로점용료를 약 1/2씩 감액 부과함으로 인해 □□□□□□(주)는 정액의 62%(2017년 금aaa,aaa원, 2018년 금b,bbb,bbb원), ▲▲▲▲▲▲▲은 정액의 75%(2018년 금c,ccc,ccc원)만 부과하여 합계 금d,ddd,ddd원을 과소 부과한 사실이 있다.

※ ▲▲▲▲▲▲▲의 경우 도로점용 부분과 닿아 있는 토지(○○동 xxxx-y번지)의 공시지가가 아닌 도로점용이 발생하는 토지(○○동 zzzz번지)의 공시지가를 적용(공시지가 e,eee,eee원 → fff,fff원)함으로 인해 공시지가 또한 과소(오류) 적용

**조치할 사항** **도로관리사업소장은**

**【 시 정 】**

과소 부과된 도로점용료 x,xxx,xxx원을 정당 부과조치 하시고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 일련번호 | 4 | 감사자 | □□△급 ○○○ | | 공 개(○)<br>비공개( ) |
|---|---|---|---|---|---|
| 신분상 조치인원 | - | 재정상 조치방법 | | 재정상 조치금액 | |
| 수감부서<br>(처리할 부서) | 도로관리사업소<br>(□□□□팀,○○○○▲팀) | 처분지시일자 | | 회신기일 | |

# 파 주 시
# 주 의 요 구

**제 목** 도로점용허가 처리업무 소홀

**관 계 부 서** 도로관리사업소 □□□□팀, ○○○○▲팀

**내 용**

**[표] 도로점용 허가 처리절차**

| 신청인 | 도로관리사업소 | | | |
|---|---|---|---|---|
| 신청 | 접수 | 검토(확인) | 결재 | 결과통보 |
| 신청서 및<br>구비서류 제출 | 서류검토 및<br>접수 | 현장확인 등 | 허가여부 결재 | 통보(허가증 등) |

○ 행정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3조(정의), 제4조(공문서의 종류)에 따라 민원인이 행정기관에 허가, 인가, 그 밖의 처분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문서와 그에 대한 처리문서는 민원문서로서 공문서에 해당하며 같은 규정 제6조(문서의 성립 및 효력발생), 제10조(문서의 결재)에 따라 문서는 결재권자가 해당 문서에 서명(전자이미지서명, 전자문자서명 및 행정전자서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방식으로 결재함으로써 성립하고, 문서는 해당 행정기관의 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 「도로법」 제61조(도로의 점용허가) 및 같은법 시행령 제54조(도로의 점용허가 신청 등)에 따라 공작물·물건, 그 밖의 시설을 신설·개축·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도로(도로구역을 포함한다.)를 점용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 신청서를 도로관리청에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 도로관리청은 「도로교통법」 제70조(도로의 점용허가 등에 관한 통보 등), 도로관리실무(국토교통부)에 따라 도로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을 허가하였을 시에는 관할경찰서장에게 그 내용을 즉시 통보해야 하고 통보를 받은 관할 경찰서장은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도로관리청에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도로관리청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조치를 하여야 한다.

○ 그러나 도로관리사업소에서는 도로점용 허가신청서(비전자문서) 접수 시 결재권자의 결재를 득하지 않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의 확보를 위하여 도로의점용허가 통보 시 관할 경찰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나 이를 행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도로관리사업소장은

**【 주 의 】**

관련 법령 연찬 등을 통해 도로점용허가 신청서 접수 시 결재권자의 결재를 득하고 도로의 점용허기 통보 시 관할경찰서에 통보하시기 바라며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 하지 않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일련번호 | 5 | 감사자 | ▢▢△급 ○○○ | | 공 개(○)<br>비공개( ) |
|---|---|---|---|---|---|
| 신분상 조치인원 | - | 재정상 조치방법 | 회수 | 재정상 조치금액 | x,xxx,xxx원 |
| 수감부서<br>(처리할 부서) | 도로관리사업소<br>(○○○○▲,△팀) | 처분지시일자 | | 회신기일 | |

# 파 주 시
# 시 정 요 구

**제 목** 계약내역 미시공 사항에 대한 준공조치 소홀

**관 계 부 서** 도로관리사업소 ○○○○△,▲팀

**내 용**

○ 도로관리사업소는 “○○리 배수로 정비공사” 등 4건 공사에 대해 아래 표와 같이 공사를 추진하였다.

〔 공사 현황 〕

| 공사명 | 계약상대자 | 주요내용 | 계약일 | 착공일 | 준공일 |
|---|---|---|---|---|---|
| ○○리 배수로<br>정비공사 | - | 측구수로관 L=36m<br>PE충진벽관 L=15m | 2016.8.29. | 2016.8.29. | 2016.9.5. |
| ▢▢동 도로침수<br>개선사업 | - | 측구수로관 L=8m<br>원형사각수로관 L=40m | 2016.8.30. | 2016.8.31. | 2016.9.28. |
| ○○동 배수로<br>확장공사 | - | 조립식PC암거 26m<br>아스콘덧씌우기 138㎡ | 2017.3.31. | 2017.4.4. | 2017.9.22. |
| ▢▢ ○○○○회관<br>보행환경 개선사업 | - | 보도정비 300m<br>우수받이설치 6개소 | 2017.10.16. | 2017.10.16. | 2017.12.13. |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집행기준」 제13장(공사계약 일반조건) 제6절(공사설계의 변경) 및 제7절(계약금액의 조정) 규정에 따라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 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는 경우 등에는 설계변경 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 “□□리 배수로 정비공사”와 “○○동 도로침수 개선사업”, “□□동 배수로 확장공사” 3건은 계약된 설계도서에 의거 수로관 및 PC박스의 기초 구조물 시공을 위해 기초 양쪽으로 거푸집을 설치한 후 콘크리트를 타설하여야 하나 준공서류를 검토한 결과 거푸집을 설치하지 않고 콘크리트를 타설한 것으로 확인 되었으며

○ “○○ □□□□회관 보행환경 개선사업”은 경계석 기초 및 L형측구 설치를 위해 거푸집을 설치한 후 콘크리트를 타설하여야 하지만 준공사진에는 거푸집을 설치하지 않고 도로 절단면 등을 활용하여 콘크리트를 타설한 것으로 나타났다.

○ 결과적으로 계약된 공종의 일부가 미시공 되었음에도 도로관리사업소는 설계변경을 통한 계약금액 조정을 하지 않았고, 이후 준공계 접수 당시에도 준공사진을 통해 미시공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준공정산 없이 준공금을 과다 지급한 사실이 있다.

〔준공금 과다 지급액〕

| 공 사 명 | 계약상대자 | 준공금(원) | 과다지급액(원) | 비 고 |
|---|---|---|---|---|
| ○○리 배수로 정비공사 | - | A | E | |
| □□동 도로침수 개선사업 | - | B | F | |
| ○○동 배수로 확장공사 | - | C | G | |
| □□ ○○○○회관 보행환경 개선사업 | - | D | H | |

**조치할 사항 도로관리사업소장은**

**【 시 정 】**

“○○리 배수로 정비공사” 등 4건 공사에 과다 지급된 금x,xxx,xxx원을 회수 조치하시고 추후 동일한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 일련번호 | 6 | 감사자 | ▢▢△급 ○○○ | | 공 개(○)<br>비공개( ) |
|---|---|---|---|---|---|
| 신분상 조치인원 | - | 재정상 조치방법 | 회수 | 재정상 조치금액 | x,xxx,xxx원 |
| 수감부서<br>(처리할 부서) | 도로관리사업소<br>(○○○○▲,△팀) | 처분지시일자 | | 회신기일 | |

# 파 주 시
# 시 정 요 구

**제 목** 건설공사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지급 부적정

**관 계 부 서** 도로관리사업소 ○○○○△,▲팀

**내 용**

○ 도로관리사업소는 “○○○○시장 도로환경 개선사업”과 “▢▢ △△마을 보행환경 개선사업” 등 2건의 공사를 아래 표와 같이 추진하였다.

〔 공사 현황 〕

| 공 사 명 | 준공금 | 계약상대자 | 확인할 사항 |
|---|---|---|---|
| ○○○○시장 도로환경 개선사업 | - | - | 신호수 인건비 지급 적정 여부 |
| ▢▢ △△마을 보행환경 개선사업 | - | - | 신호수 인건비 지급 적정 여부 |

○ 건설공사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따라 사용되어져야 하고, 동 기준 제7조(사용기준)에 따르면 신호수 인건비는 건설장비의 움직임으로 인한 위험으로부터 주변 작업자를 보호하기 위해 유도 또는 신호한 경우에만 인정될 수 있다.

○ 위 2건 공사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과 정산서류 및 준공사진을 보면 산업안전보건관리비가 신호수 인건비로 지급되었는데 신호수의 경우 증빙자료를

검토한바 공사 현장으로의 진입을 통제하거나 건설장비를 후진시키는 단순 신호수의 역할만을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 그런데 도로관리사업소는 상기 2건 공사의 계약상대자인 ▢▢건설주식회사와 ○○건설(주)가 공사 준공서류를 제출하면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정산서류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신호수 인건비로 사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인정하여 과다 지급한 사실이 있다.

〔 불필요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지급액 〕

| 공 사 명 | 계약상대자 | 준공금(천원) | 과다지급액(원) |
|---|---|---|---|
| ○○○○시장 도로환경 개선사업 | - | - | A |
| ▢▢ △△마을 보행환경 개선사업 | - | - | B |

**조치할 사항** 도로관리사업소장은

**【 시 정 】**

“○○○○시장 도로환경 개선사업” 등 2건 공사와 관련하여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불필요하게 지급된 금x,xxx,xxx원을 회수하시고 추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 일련번호 | 7 | 감사자 | □□△급 ○○○ | | 공 개(○)<br>비공개( ) |
|---|---|---|---|---|---|
| 신분상 조치인원 | - | 재정상 조치방법 | 세입 | 재정상 조치금액 | xx,xxx원 |
| 수감부서<br>(처리할 부서) | 도로관리사업소<br>(□□□□팀) | 처분지시일자 | | 회신기일 | |

# 파 주 시
# 시 정 요 구

**제 목** 신용카드 통장관리 소홀

**관 계 부 서** 도로관리사업소 □□□□팀

**내 용**

**□ 신용카드 통장 관리 현황**

| 카드계좌 | 현재액 | 지출예정액 | 차액 | 비고 |
|---|---|---|---|---|
| AAA-BBB-CCCC-DD | x,xxx,xxx | y,yyy,yyy | xx,xxx | |

○ 「파주시 재무회계 규칙」 제52조(지출 및 지급의 원칙)에 의하면 지출원이 지급명령을 발하거나 출납원이 지급할 때에는 채무가 확정되고 지급기한이 도래한 후 정당한 채주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지출행위에 앞서 회계관계법규에 의한 적법 여부를 심사한 후에 지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또한,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제Ⅳ장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카드 사용요령”에 의하면 신용카드 이용대금은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첨부하여 결제일까지 해당 예산과목에서 카드이용대금 결제계좌로 입금조치 하여야 하며, 담당공무원은 매월 1회 카드사용내역을 검색하여 분임재무관까지

보고(결재)하고, 분임재무관은 이를 확인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담당공무원은 신용카드 이용대금 통장에 입금된 금액과 카드이용대금을 대조하여 미입금된 내역에 대해서는 결제일 전까지 지급 결의하여 입금조치 해야 하며, 과다 입금된 경우는 원인 규명 등의 조치를 하여 신용카드 통장을 관리하여야 한다.

○ 그러나 도로관리사업소에서는 결제기준일인 2018. 4. 27일 현재 결제예정 금액 x,xxx,xxx원보다 xx,xxx원이 많게 적립되어 있음에도 원인 규명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신용카드 통장을 관리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도로관리사업소장은**

**【 시 정 】**

신용카드통장 잔액과 카드결제일 지출금액을 확인하여 차액 금액에 대하여 원인 규명하여 잔액과 지출예정금액을 동일금액으로 조치하시고,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법령 연찬을 통해 업무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일련번호 | 8 | 감사자 | □□△급 ○○○ | | 공 개(○)<br>비공개( ) |
|---|---|---|---|---|---|
| 신분상 조치인원 | | 재정상 조치방법 | | 재정상 조치금액 | |
| 수감부서<br>(처리할 부서) | 도로관리사업소<br>(□□□□팀) | 처분지시일자 | | 회신기일 | |

# 파 주 시
# 주 의 요 구

제 목 업무추진비 집행 부적정

관 계 부 서 도로관리사업소 □□□□팀

내 용

## □ 업무추진비 집행 내역

| 구분 | 집행일자 | 사용내역 | 금액(원) |
|---|---|---|---|
| 시책추진업무추진비 | 2017.10.10 | 직원격려 | XX,XXX |
| | 2017.11.06 | 직원격려 | XX,XXX |
| | 2017.11.06 | 직원격려 | XX,XXX |
| | 2017.12.08 | 직원격려 | XX,XXX |
| 정원가산업무추진비 | 2016.12.28. | 정년퇴직 및 전출직원 축하선물 구입 | XXX,XXX |
| | 2016.12.28 | 정년퇴직 및 전출직원 축하선물 구입 | XXX,XXX |

○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제3조에 따르면 업무추진비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보조기관, 의회사무기구의 장, 소속 행정기관의 장 및 하부행정기관의 장의 직무수행에 드는 비용과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행사, 시책추진사업, 투자사업의 원할한 추진을 위한 비용을 말하고 회계관계공무원 및 업무추진비 집행공무원은 [별표1]에 규정된 직무활동에 대하여 집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조문별 해설에 의하면 집행내용이 기관운영 성격인지 시책추진 성격인지 판단하여 단순한 내부직원 격려를 위하여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집행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집행기준」 정원가산 업무추진비는 <직원사기진작을 위한 경비로서 동호인 취미클럽, 체육대회, 생일 기념품, 불우공무원 지원 등에 소요되는 경비>로 연간집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동호인 취미클럽 지원은 취미클럽으로부터 행사계획 등을 제출받아 형평성 있게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그러나 도로관리사업소에서는 단순한 내부직원 격려를 위하여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집행한 사실이 있으며, 정원가산업무추진비에서 정년퇴직 직원 및 전출직원 선물을 구입하는 등 업무추진비를 부적정하게 집행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도로관리사업소장은**

**【 주 의 】**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법령 연찬을 통해 업무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일련번호 | 9 | 감사자 | □□△급 ○○○ | | 공 개(○)<br>비공개( ) |
|---|---|---|---|---|---|
| 신분상 조치인원 | - | 재정상 조치방법 | | 재정상 조치금액 | |
| 수감부서<br>(처리할 부서) | 도로관리사업소<br>(○○○○△,▲팀) | 처분지시일자 | | 회신기일 | |

# 파 주 시
# 주 의 요 구

**제 목** 준공검사공무원 임명 부적정

**관 계 부 서** 도로관리사업소 ○○○○△,▲팀

**내 용**

○ 도로관리사업소는 도로 제설작업을 위해 아래 표와 같이 “2017년~2018년 설해대책 임차장비 용역(1권역)” 등 5건의 용역을 추진하였다.

〔 공사 현황 〕

| 용 역 명 | 준공금 | 계약상대자 | 비고 |
|---|---|---|---|
| 2017년~2018년 설해대책 임차장비 용역(1권역) | - | - | |
| 2017년~2018년 설해대책 임차장비 용역(2권역) | - | - | |
| 2017년~2018년 설해대책 임차장비 용역(3권역) | - | - | |
| 2017년~2018년 설해대책 임차장비 용역(4권역) | - | - | |
| 2017년~2018년 설해대책 임차장비 용역(5권역) | - | - | |

○ 파주시가 시행하는 시설공사(용역)의 기성부분검사, 준공검사, 하자검사, 특별검사 등 검사에 관한 사항은 「파주시 시설공사 검사업무규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 「파주시 시설공사 검사업무규정」 제5조(검사원의 제출)에 따라 계약상대자로부터 준공검사원이 접수된 때에는 같은 규정 제6조(검사공무원의 임명) 제1항 ‘별표(아래 표 참조)’와 같이 공사금액별 기준에 따라 검사공무원 및 입회공무원을 임명하여야 한다.

〔 (별표) 공사금액별검사기록부 〕

| 구분 | 검 사 구 분 | | | |
|---|---|---|---|---|
| | 준 공 | 기 성 | 특별검사 | 하자검사 |
| 2억원 이상 | 과 장<br>( 5 급 ) | 담 당<br>( 6 급 ) | 과 장<br>( 5 급 ) | 담 당<br>( 6 급 ) |
| 1억원 이상<br>2억원 미만 | 담 당<br>( 6 급 ) | 담 당<br>( 6 급 ) | 담 당<br>( 6 급 ) | 담 당<br>( 6 급 ) |
| 1억 미만 | 담 당<br>( 6 급 ) | 7급 이하 | 담 당<br>( 6 급 ) | 7급 이하 |

○ 그러나 도로관리사업소가 추진한 “2017년~2018년 설해대책 임차장비 용역(1권역)” 등 5개 용역은 준공금액이 2억원 이상으로 5급 이상 공무원을 준공검사 및 입회공무원으로 임명하여 준공검사를 이행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도로관리사업소는 2억원 미만의 공사(용역) 준공검사가 가능한 도로관리사업소내 6급 공무원을 준공검사 및 입회공무원으로 임명하여 준공 처리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도로관리사업소장은

**【 주 의 】**

앞으로 공사(용역) 준공검사공무원 임명 시 「파주시 시설공사 검사업무규정」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준공검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 일련번호 | 10 | 감사자 | □□△급 ○○○ | | 공 개(○)<br>비공개( ) |
|---|---|---|---|---|---|
| 신분상 조치인원 | 훈계2 | 재정상 조치방법 | | 재정상 조치금액 | |
| 수감부서<br>(처리할 부서) | 도로관리사업소<br>(○○○○△팀,□□□□팀) | 처분지시일자 | | 회신기일 | |

# 파 주 시
# 주의 요구 및 훈계

제 목 예산변경 협의 절차 미 이행

관 계 부 서 도로관리사업소 ○○○○△팀, □□□□팀

내 용

## 1. 현황

□ '17년 ~ 18년 설해대책 임차장비 예산 집행 현황

| 공사명 | 계약금액 | 변경금액<br>(증액) | 준공금 | 예산항목 | | 비고 |
|---|---|---|---|---|---|---|
| | | | | 시설부대비 | 시설비 | |
| 총계 | | | | AAA,AAA,AAA | BBB,BBB,BBB | |
| 설해대책임차장비(1권역) | - | - | - | | | |
| 설해대책임차장비(2권역) | - | - | - | | | |
| 설해대책임차방비(3권역) | - | - | - | XXX,XXX,XXX | XXX,XXX,XXX | 예산변경미협의 |
| 설해대책임차장비(4권역) | - | - | - | YYY,YYY,YYY | YYY,YYY,YYY | 예산변경미협의 |
| 설해대책임차장비(5권역) | - | - | - | ZZ,ZZZ,ZZZ | ZZZ,ZZZ,ZZZ | 예산변경미협의 |

○ 도로관리사업소에서는 원활한 재설작업 처리를 위하여 파주시 권역을 1권역~5권역으로 나누어 설해대책 계획을 수립 임차장비를 계약 운영하고 있다.

○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수립 기준」에 따르면 예산집행 <예산의 변경>은 동일 단위사업내 세부사업 간 또는 동일 세부사업 내 편성목(통계목) 간 예산을 실.국장 책임하에 상호 융통하여 사용하는 것을 말하며 사업담당자는 변경내역서를 작성, 실·국장이 결정하여 변경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변경사용 절차는 변경사용내역 작성(사업담당) → 협의(예산부서) → 결정(실·국장) → 예산부서에 통지하도록 되어 있다.

○ 그러나 도로관리사업소에서는 설해대책 임차장비 예산을 집행하면서 명시이월된 ○○○○만원과 본예산 시설부대비 □□□□만원의 예산을 1권역과 2권역의 준공대금으로 집행 하였으며, 그 외 구간 3권역~5권역의 임차장비 사용대금은 세출예산 변경 절차 없이 편성목(통계목)이 같은 시설비로 준공금을 집행한 사실이 있다. 동일 세부사업 내 편성목(통계목)간 융통하여 사용할 경우 사전 예산부서의 협의 절차를 득하도록 되어 있으나 도로관리사업소에서는 이를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도로관리사업소장은**

**【 주　의 】**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설해대책 종합계획을 면밀히 검토하여 관련규정을 준수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련자 문책(훈계)

| 일련번호 | 11 | 감사자 | □□△급 ○○○ | | 공 개(○)<br>비공개( ) |
|---|---|---|---|---|---|
| 신분상 조치인원 | 훈계2, 주의2 | 재정상 조치방법 | | 재정상 조치금액 | |
| 수감부서<br>(처리할 부서) | 도로관리사업소<br>(○○○○△팀) | 처분지시일자 | | 회신기일 | |

# 파 주 시
# 주의 요구 및 훈계

**제 목** **예산(용역 품의) 집행 전결사항 미 준수**

**관 계 부 서** **도로관리사업소 ○○○○△팀**

**내 용**

○ 예산집행 품의는 사업담당자가 사업을 추진하기에 앞서 집행내역과 사업계획을 포함하여 총 설계액 규모에 따라 **「파주시 재무회계 규칙」**과 **「파주시 사무전결처리규칙」**에 따라 권한을 가진 결재권자의 결재를 득하여야 한다. 도로관리사업소는 **「파주시 재무회계 규칙」**제2조제①항에 따라 제1관서로서 소장은 국장과 동일하게 집행을 할 수 있으며 제21조(예산집행품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전결로 예산집행품의의 위임규정을 두고 있다.

1. **부시장** : **추정금액이 4억원 이하의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이나 **2억원 이하인 제조, 용역**을 하게 하거나 그 외의 것으로서 1건당 1억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
2. 국장 : **추정금액이 2억원 이하인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이나 **1억원 이하인 제조, 용역**을 하게 하거나 그 외의 것으로서 1건당 5천만원 이하인 집행에 관한 사항
3. 과장 : **추정금액 1건당 3천만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과 봉급, 수당등 법령에 따라 지출의무가 있는 사항. 다만, 임시일상경비의 경우에는 국장 이상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 또한,「행정의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10조(문서의 결재)제②항에 근거하여  파주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결정권한을 합리적으로 배분하고, 결정절차를 명확히 정하여 사무집행상의 권한과 책임의 소재를 명백히 하고, 행정사무의 신속하고 능률적 처리를 기하기 위한「파주시 사무전결 처리규칙」제4조(전결대상사무)는 사무배분의 원칙을 고려하여 아래와 같이 별표1에 아래와 같이 공통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별표1 단위사무별 전결처리 사항(공통) 중 일부**

| 공사설계 및 설계변경 |
|---|
| 1. 공사설계(3천만원 이하 공사) : 과장 |
| 2. 공사설계(2억원 이하 공사·토지매입, 1억원 이하의 제조·용역, 1건당 5천만원 이하) : 국장 |
| 3. 공사설계(4억원 이하 공사·토지매입, 2억원 이하 제조·용역, 1건당 1억원 이하) : 부시장 |

○ 도로관리사업소에서는 2016년 실시한 도로관리사업소 종합감사에서 ‘예산집행품의 전결사항 미준수’로 기관경고 처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감사일 현재까지 각종 용역 사업을 진행하면서「파주시 재무회계 규칙」과 「파주시 사무전결 처리규칙」에 규정한 적합한 최종결재권자의 결재를 받지 않고 아래 [별표2]와 같이 2016년 하반기 ○○○○○장비 임차단가계약 용역 등 12건 사업에 대해 부시장 또는 시장의 전결로 처리해야할 사무를 ‘소장’ 전결로 처리하여 예산규모에 맞는 적합한 권한이 없는 자가 권한을 행사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도로관리사업소장은**

**【 주  의 】**

관련 법령 연찬을 통해 동일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2016년 종합감사 기관경고 처분사항으로 동일한 사례 - 관련자 문책**(훈계·주의)**

| 일련번호 | 12 | 감사자 | □□△급 ○○○ | | 공 개(○)<br>비공개( ) |
|---|---|---|---|---|---|
| 신분상 조치인원 | - | 재정상 조치방법 | | 재정상 조치금액 | |
| 수감부서<br>(처리할 부서) | 도로관리사업소<br>(○○○○△팀) | 처분지시일자 | | 회신기일 | |

# 파 주 시
# 주 의 요 구

**제 목** 건설기계·제설장비 및 자재 보관 관리 소홀(도난·화재 등)

**관 계 부 서** 도로관리사업소

**내 용**

○ 「건설기계관리법」 제12조(건설기계의 안전기준 등)에 따르면 '건설기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조 및 장치가 안전운행 또는 사용에 필요한 성능과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고 「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166조(소화설비)에 따르면 '건설기계는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제5항에 따른 능력단위 1 이상의 에이·비·씨 소화기 1개 이상을 설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그러나 도로관리사업소에서는 건설기계(굴삭기)의 안전 운행을 위하여 화재 사고 등에 대응할 수 있도록 위 능력단위의 소화기를 설치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또한 건설기계 및 제설장비 등 고가의 장비와 도로정비 자재를 보관하고 있으나 외부인 출입통제를 위한 방안이나 장치(CCTV 등)가 없어 도난·화재에 취약함에도 이에 대한 대책 관리에 소홀한 사실이 있다.

[표] 건설기계 소화기 비치 여부

| 종류 | 개수 | 소화기 비치 여부 | 비고 |
|---|---|---|---|
| 굴삭기(06) | 1대 | **없음** | |
| 덤프트럭(15톤) | 1대 | 있음 | |

**조치할 사항** 도로관리사업소장은

**【 주 의 】**

건설기계·제설장비 및 자재 보관 관리에 대하여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규정 준수 및 대책 마련 등 업무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일련번호 | 13 | 감사자 | □□△급 ○○○ | | 공 개(○)<br>비공개( ) |
|---|---|---|---|---|---|
| 신분상 조치인원 | - | 재정상 조치방법 | | 재정상 조치금액 | |
| 수감부서<br>(처리할 부서) | 도로관리사업소<br>(□□□□□팀) | 처분지시일자 | | 회신기일 | |

# 파 주 시
# 주 의 요 구

**제 목** **「시설물 안전점검」 업체 선정시 교육이수 여부 확인 소홀**

**관 계 부 서** **도로관리사업소 □□□□□팀**

**내 용**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안전점검의 실시)에 따르면 ‘관리주체는 소관 시설물의 안전과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책임기술자의 자격 등)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책임기술자의 교육훈련 등)에 따르면 ‘책임기술자가 되려는 사람 및 책임기술자의 감독하에 정밀안전진단 또는 성능평가를 실시하려는 사람은 법에서 지정한 교육기관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해당 분야(교량 및 터널, 수리, 항만, 건축 분야로 구분한다)의 정밀안전진단교육 또는 성능평가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정기안전점검 35시간 이상 / 정밀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각각 70시간 이상 / 성능평가 14시간 이상).’라고 규정하고 있다.

○ 그러나 도로관리사업소에서는 시설물 안전점검(정기점검 및 정밀점검 등) 용역업체 공고·선정 시 책임기술자 및 참여기술자의 해당분야 교육이수 여부 등을 확인해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표] 안전점검 용역 현황

| 계 약 명(15건) | 계 약 업 체 | 착공일 | 준공일 |
|---|---|---|---|
| □□지하차도 외 4개 시설물 정밀점검 용역 | - | | |
| □□교 외 4개 시설물 정밀점검 용역 | - | | |
| ○○교 외 2개 시설물 정밀점검 용역 | - | | |
| ○○교(□□교) 정밀안전진단 용역 | - | | |
| □□□교 외 6개 시설물 정밀점검 용역 | - | | |
| □□□2교 정밀안전진단 및 ○○○○ 정밀점검 용역 | - | | |
| ○○공동구 정밀점검 용역 | - | | |
| ○○육교 외 1개소 정밀안전진단 용역<br>(○○육교, □□램프D교) | - | | |
| ○○1교 외 5개 시설물 정밀점검 용역 | - | | |
| □□교 외 2개 시설물 정밀점검 용역 | - | | |
| ○○교 외 4개 시설물 정밀점검 용역 | - | | |
| 2016년 하반기 시특법 시설물 정기점검 용역 | - | | |
| 2017년 상반기 시특법 시설물 정기점검 용역<br>(□□1교 외 36개소) | - | | |
| 2017년 하반기 시특법 시설물 정기점검 용역 | - | | |
| 2018년 상반기 시특법 시설믈 정기점검 용역 | - | | |

**조치할 사항** 도로관리사업소장은

**【 주 의 】**

안전점검 용역업체 공고·선정 시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규정을 준수하여 업무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일련번호 | 14 | 감사자 | ▢▢△급 ○○○ | | 공 개(○)<br>비공개( ) |
|---|---|---|---|---|---|
| 신분상 조치인원 | - | 재정상 조치방법 | | 재정상 조치금액 | |
| 수감부서<br>(처리할 부서) | 도로관리사업소<br>(○○○○▲팀) | 처분지시일자 | | 회신기일 | |

# 파 주 시
# 주 의 요 구

**제 목** 파주시 도로관리 심의회 운영회의록 미작성

**관 계 부 서** 도로관리사업소 ○○○○▲팀

**내 용**

**[표] 도로심의회 운영 현황**

| 연도 | 집합심의 | 서면심의 | 회의록작성여부 | 비고 |
|---|---|---|---|---|
| 2015 | 1회 | 3회 | 부 | |
| 2016 | 1회 | 1회 | 부 | |
| 2017 | 2회 | 2회 | 부 | |
| 2018 | 1회 | 1회 | 부 | |

○ 파주시 도로관리심의회 운영조례는「도로법」시행령 제34조에 따른 도로굴착 관련 사업을 사전 조정토록 하여 빈번한 도로굴착으로 인한 예산의 낭비를 방지하고 교통 소통의 원활과 도로질서의 유지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며 제3조(기능)에 따라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 한다.

1) 도로굴착 관련사업의 장기계획 및 연차계획의 수립·조정
2) 도로점용에 관한 사업계획 및 교통소통 대책
3) 도로굴착관련 시설의 유지·관리
4) 주요 지하매설물의 안전대책
5) 도로 굴착공사의 시행에 따른 도로시설의 안전 대책
6) 제1호 내지 제5호의 도로굴착과 관련된 사항

○ 「파주시 도로관리심의회 운영조례」 제5조(심의회의 회의 및 의사) 및 제9조(회의록)에 따라 위원장은 심의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간사로 하여금 회의록을 작성 비치토록 해야 한다.

○ 그러나 도로관리사업소에서는 2015년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도로관리심의회를 개최하면서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도로관리사업소장은**

**【 주 의 】**

관련 법령 연찬 등을 통해 도로관리 심의회 개최에 따른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시기 바라며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